

노동부 고시 제1999-19호

1999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고시 등 안내

1999년 4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공사의 시공제한 철폐) 및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1999년 7월 1일 시행)으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도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고시하였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661㎡ 이내인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및 연면적이 495㎡ 이내인 기타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인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면적에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는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다.

고용보험을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에 개산보험료보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한 후 동 보험료를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의 규정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1999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은 3억4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